

대전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1202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및 위약금]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1202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합1073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 선고 2019. 9. 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합1073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최한순

판사이흥주